

장애자 職業欲求에 對한 對策

민 은 식

(삼육재활원 부원장)

1. 직업재활의 대상자

우리나라의 심신장애자는 1979년도 한국 경제개발협회가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수를 보면 1,086,823명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119,166명으로 20세에서 59세까지의 장애자 수가 675,928명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장애자의 64%가 활동적으로 일해야 되는 연령층에 있다는 것이 된다. 물론 67만명 모두가 직업재활이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미국의 경우 전체 노동인구의 20%가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으나 직업적 재활을 갖고 있는 자는 전체노동인구의 6%로 되어있다. 다시말해서 신체장애자 중 직업적 장애를 갖고 있는율이 약 30%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을 적용해보면 약 20만명의 직업재활대상자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2. 직업재활을 위한 입법행정제도

장애자의 재활사업에 관한 한 현재까지 제도적으로나 시책적으로 뚜렷한 기본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이군경들을 위한 것은 직업재

<편집자주> 한국신체장애자 재활협회주최 제 2회 장애자복지대회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

활법이나 고용법이 있어 상당한 수준으로 법적 인 보장을 하고 있으나 이외의 일반장애자들이나 산재장애자들을 위해선 직업재활적 대책이 전무하다고 보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일법부재와 더불어 장애자의 직업재활을 전달할 정부조직내의 행정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못하여 장애자의 직업재활은 산발적으로 몇 곳의 시설에서 직업훈련만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교부소관의 특수학교들은 학교대로 직업훈련을 그들의 교육과정에 넣어두고 있고 보건사회부의 성인불구시설이나 장애아복지시설들은 그들 나름대로 직업보도시설을 몇 곳 갖추고 있고 노동청은 노동청대로 산재재해자들을 위하여 산재재활원내에 직업훈련부를 두고 있으나 약간의 직업훈련에만 그치고 있고 본격적훈련이나 직업평가나 취업조시 등의 제도는 전무한 실태이다.

3. 직업 재활상담

직업재활에 관한 입법과 제도의 부재는 직업재활 대상자들을 위하여 상담지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한국경제개발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장애자중 직업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자는 13.05%에 지나지 않고 있고 이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8.87%만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볼때 심신의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적재활을 위하여 그들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다.

4. 장애자의 소득

한국개발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장애자들의 월소득이 15만원 이상 되는 자들은 겨우 2.69%에 지나지 않게 나와있다. 이를 우리나라 79년도 9월 전 산업 월 평균 임금이 165,923원인 것과 비교할때 장애자의 소득수준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자를 가족으로 갖고 있는 가정의 60%가 그들의 생활수준을 하류

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심신의 장애는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심신장애자들의 직업적 재활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들은 절대 빈곤계층에 그대로 머물러 사회적부담의 압박을 계속해서 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 서비스기관 및 전문요원

우리나라 전국 직업훈련기관수는 80년도 노동 직업훈련보고서에 의하면 총 611개소가 있어 이에 54,803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소에서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곳은 산업재활원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인성직업훈련소 1개소 뿐이 아닌가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성인불구시설의 경우 29개소에 수용정원이 4,957명인데 이들에 대한 직업재활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아시설이 전국적으로 54개소 있는데 이중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수개소에 불과하다. 보건사회부 아동과의 재활 및 직업훈련시설 보안계획에 볼 것 같으면 81년까지 직업훈련 시설을 38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못하여 수개소 설치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노동청은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35개소의 노동사무소를 갖고 있고, 이에 직업안전과를 두고 있으나 장애자들을 위한 직업상담이나 취업알선 서비스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기관이 없으니 이에 일할 수 있는 직업재활 전문요원이 있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분야의 발전이 앞으로 불가피한데 비하여 너무나 전문력이 없다. 직업재활 분야에서의 전문직을 말하면 직업상담가(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or), 재활행정가(Rehabilitation Administrator), 직업평가자(Vocational evaluator), 그리고 취업알선가(Placement worker) 등이 있다. 직업상담, 재활행정, 직업평가같은 분야를 이미 박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이 많은 미국대학에서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사업과가 특수교육과 출신들이 가장 이 분야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나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과정이 전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일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6. 전망과 대책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교통수단의 발달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뿐만아니라 의료의 발달은 노인 인구의 증대를 가져왔고 신체적 불구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장애자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 하겠다.

70년도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35,398건이었던 것이 79년도는 129,447건이 되어 무려 3.6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발생은 역시 장애자의 발생을 가져오고 있다. 71년도에 산업재해로 발생한 신체장애자수는 1,146명이었는데 79년도는 17,245명으로 9년간에 약 1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로 발생하는 부상자는 72년도에 73,492명이 78년도엔 81,170명으로 약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개발협회가 조사한 심신장애의 발생원인들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장애자가 된율이 21.55%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각종 안전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질환의 후유증으로 장애를 유발시키는 율이 35.56%나 되어 각종 질환으로 결과되는 장애자의 발생수가 상당하리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와같이 장애자의 발생수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활 대책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엔 이들에 대한 직업재활대책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가. 입법 및 제도의 확립

다행히 81년도 세계장애자의 해를 앞두고 보

● 특집 : 장애자의 복지전망

건사회부에서 장애자복지법의 제정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어 장애자의 복지증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법 초안에서 볼 것 같으면 장애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규정이 삽입되어 있어 많은 장애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리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보다 강력하게 정부기관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관의 의무고용제를 채택해야 할 것으로 안다. 이러한 의무고용제와 더불어 이들 장애자들의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적어도 노동청의 각 지방 사무소내에 장애자직업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여기서 취업을 원하는 장애자의 등록을 받고 이들을 평가하여 직접 취업이 가능한 자는 취업시키고 훈련이 가능한 자는 훈련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직업재활의 대책 중 의료적, 교육적, 사회복지적 서비스가 직업훈련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가 필요한 장애자에게는 치료를, 생계유지의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계보호를, 교육이 필요한 자에게는 교육을 시킴으로 직업재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장애자의 직업재활 대책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성을 추구하려면 장애자의 직업재활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내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청은 노동청대로 보건사회부는 보건사회부대로 문교부는 문교부대로 자기 저마다의 사업이 있어 독자적으로 그들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기능의 중복, 예산의 낭비, 역할의 갈등이 오게 되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수행하게 된다.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자복지심의회가 중앙에서는 국무총리 직속하에 지방의 경우 지방장관직속하에 설치되어 관련 부서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운영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서비스 기관의 설치 확대

우리나라 직업재활 기관 현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업재활에 관련된 전문기관과 요원이 너무 없고 있는 기관도 그 기능이 미약하다. 적어도 단위로 종합 재활 센터가 있어 이곳에서 장애자의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평가를 하여 적절한 훈련기관 또는 취업기관에 알선할 수 있어야겠다.

훈련기관의 경우, 일반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기관의 시설을 개선하여 (특히 공공직업훈련소) 장애자들의 직업훈련을 포함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직훈련(On the Job Training)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고용주들에게 훈련수당 또는 금융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나가야 하겠다. 현재 산업재해자들을 위한 산업재활원과 원호대상자들을 위한 직업재활원을 과감히 일반장애자들의 직업재활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장애자들만 고용하는 복지공장을 지역의 욕구에 따라 설치하여 일반업체에서 일할 수 없는 심신의 조건을 가진 장애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공장은 장애자들의 직업훈련기관으로도 훌륭히 활용 수 있는 것이다.

다. 사회환경의 개선

사회환경의 개선엔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물리적 환경인 것이다. 전자의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애자에 대한 편견을 들 수 있겠다. 신체적 결함이 곧 인격적 결함으로 해석되어 사회로부터 장애자들을 소외시키고자하는 경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애자들의 직업재활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장애자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다. 여기에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메스 미디어를 통한 국민제봉사업에 책임이 있다 하겠다.

두번째로 생각할 것은 물리적 환경의 장애물이다.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직업적재활에 가장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교통과 각종 건축물이 되겠다. 하반신 마비자의 경우 일반 버스나 택시 또는 전철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지의 기능이 있다 하여도 직장까지 갈 수가 없고 직장의 작업환경이 휠체어를 타고 일할 수 없는 고로 비록 직업적 기능을 갖고 있어도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건축물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운동이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겠다. 다행스럽게 보건사회부에서 초안한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중이 사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기업체가 장애자들을 고용하는데 따른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라. 전문요원의 양성

직업재활에 있어서 상담자의 장애자에 대한 조언, 지도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은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가지 직종에 대해 직업분석(Job Analysis)을 통해 갖고 있는 정보를 장애자를 평가한 자료와 연관시켜 적절한 직업에 적절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상담자의 역할은 직업재활사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분야이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상담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이다. 따라서 직업평가자와 취업알선가같은 전문요원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사업과나 특수교육학과를 둔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련된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경우 이곳에서 배출

된 졸업생들을 직업재활상담가 또는 취업알선가로 활용할 수 있고 이들을 졸업후 집중적으로 직업평가에 대한 실습을 시킬 경우 직업평가자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무리 훈련양성을 해 놓아도 전문인으로서의 긍지와 생활의 안정을 가질 수 없다면 이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전문직에 부응하는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 직업적 장애의 예방

가장 경제적인 것은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또는 각종 공해나 질병에서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구되어 실시되어야겠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장애자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직업적 장애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치료가 끝나면 직업적 문제에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와 더불어 직업재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의료계의 경우 배개는 의료적 치료에 치중을 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적 장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각 종합병원내에 재활의학과가 설치돼서 직업 또는 재활상담자(사회사업가 역할대행 가능)가 재활의학과와 팀에 참여해서 장애를 가진 확률이 있는 환자의 상담업무에 임해야 되고 이들은 그들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청 지방사무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특수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의 직업지도를 보다 강화 시킴으로 장차 그들 학생들은 직업적 장애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